

취업규정

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이사장은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(이하 “난임치료휴가”라 한다)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. 다만,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1. 이사장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,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2. 이사장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7조(법정휴가 및 임신부의 보호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시술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.</u></p> <p>⑤ ~ ⑧ (생략)</p>	<p>제27조(법정휴가 및 임신부의 보호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이사장은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(이하 “난임치료휴가”라 한다)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. 다만,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</u></p> <p>1. <u>이사장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,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2. <u>이사장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 ~ ⑧ (현행과 같음)</p>